

제8차 북태평양수산위원회(NPFC) 연례회의 참석 결과

□ 개요

- (일시/장소) '24.4.9(화)~4.18(목) 09:00~18:00(한국시간) / 일본 오사카
- (참석자) 한국, 일본, 중국, 미국, EU 등 9개 회원, NGO 등 약 150명
 - * (한국대표단) 해수부 국총과, 원산과, 수과원, FMC, 원양협회, 협력센터, 시민환경연구소
- (주요의제) 회원국 이행평가, 태평양 쾅치, 참고등어, 북서태평양 저층 어업, 전채, 선원 근로표준, IUU 선박목록, 위원회 예산 등

□ 기술이행위원회 주요 논의내용

1. 'NPFC 어업 개관' 문서 오류

- 주요내용
 - 사무국이 발표한 'NPFC 어업('18~'23) 개관' 문서 내 회원국별 허가 선박 척수 및 조업 척수 수치에 오류들이 지적
 - 본 문서가 공개될 경우 외부에서 IUU 등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비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개진
 - 본 문서의 중요성과 타 기구 관행에 비추어 문서를 공개하기로 하고, 문서 서두에 데이터 부정확성 및 원용 금지 문구를 추가하기로 함
 - 데이터 오류 수정 및 데이터 보고 과정 개선을 위해 회기간 사무국과 회원국들이 협업하기로 함

2. IUU 선박목록

- 주요내용
 - 일본은 공해 승선검색 중 중국 선박이 1.4톤의 연어 전채를 미보고한

-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선박을 IUU 목록에 포함하는 것을 제안
- 중국은 NPFC 보존관리조치 상 비관리종에 대해 회원국이 어종별 보고를 하도록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을 주장하고,
 - 해당 선박이 조업일지에는 연어 어획을 기록하였으나, 당시 중국 내부적으로 비관리종에 대해 당국에 어종별 보고를 하도록 하지 않았고, 일본과 양자협약에서 관련 자료들을 일본에 제출했음을 설명
 - 미국과 캐나다는 전재신고서에 FAO 어종 코드를 사용하여 어종별 보고를 해야 하고, 어종별 보고 의무는 회원국뿐만이 아닌 어선에게도 적용됨을 주장
 - 위원회는 절차적으로, 중국이 본 사안 관련 소명 자료를 위원회에 사전 제출했어야 함을 확인하고, 중국의 소명 자료 및 내부 시스템 개선사항 확인 후, 본 선박을 IUU 잠정 목록에 포함하지 않기로 합의

□ 재정위원회 주요 논의내용

1. NPFC 법률 자문가 고용

○ 제안서(한국) 주요내용

- 상당한 위원회 업무 초기 작업이 사무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바, 법규 적용 및 해석 관련 법적 자문 필요성이 있으므로, 국제수산 법률 전문가를 고용하여 사무국 업무 지원에 사용하는 것을 제안

○ 논의 결과

- 회원국들은 법규 적용 및 해석에 대한 최종 판단권은 위원회에 있고, 예산 부담을 고려해야 함을 언급하고 위임사항*을 포함한 제안서 채택

* ① "필요할 때마다" 독립 전문가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자문 의뢰 ② 독립 전문가의 자문은 위원회 시각/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③ 자문 대상은 사무국 직접 기능과 관련된 분야로 한정 ④ 독립 전문가는 위원회 회의에 불참 ⑤ 회원국들은 고용된 독립 전문가에게 NPFC 이슈 관련 자문 의뢰 금지

2. 향후 연도 위원회 예산

○ 향후 연도 위원회 예산 채택

구분	2023/24(현재)	2024/25	2025/26	2026/27(잠정)
예산	160,804,996	170,579,723	161,623,995	169,917,384
전년비	2.25% 증가	6.08% 증가	5.25% 감소	5.13% 증가

* 단위 : 엔(¥), 회계연도 : 4.1~익년 3.31

- 2024/25년 예산 증가 요인 : 데이터베이스 정비, 전재신고서 수동 입력 등
- 일본이 2024/25년에 7,304,000엔을 추가 납부하기로 함으로써, 타 회원국들의 분담금 인상 부담이 해소

○ 향후 연도 한국 분담금

구분	2023/24(현재)	2024/25	2025/26
한국 분담금	7,758,013	7,162,184	7,063,003
전년비	10.07% 감소	7.68% 감소	1.39% 감소

* 단위 : 엔(¥), 회계연도 : 4.1~익년 3.31

□ 총회 주요 논의내용

1. 태평양 쉼치

○ 제안서(일본) 주요내용

- 태평양 쉼치를 위한 임시 어획통제규칙(HCR)을 수립하고 HCR을 토대로 총허용어획량(TAC) 및 국별 할당을 설정

- 과학위 작업반에서 준비한 4개 HCR 옵션* 중 하나를 선정

* 관리주기간 TAC 변동률이 상이 : ① 10% 변동 옵션은 안정적인 TAC 확보가 가능하나 자원상태 목표 도달이 지연, ② 40% 변동 옵션은 자원상태 목표 도달을 속히 할 수 있으나 단기적인 어획 감축이 불가피

○ 논의 결과

- '24년을 위한 잠정 HCR 선정 : 관리주기간 TAC 변동률 10%에 합의
- 잠정 HCR을 적용한 '24년 전체 TAC (협약수역 + EEZ) : 225,000톤 (협약수역 TAC : 135,000톤)
- 어획량 모니터링을 위한 주간 어획보고 실시
- 모든 회원국 어획량 합산이 TAC 90% 도달 시, 사무국장은 모든 회원국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고, 어획한도 10,000톤을 초과하는 회원국은 통보받은 72시간 내 조업 중단. 그 외 회원국은 어획한도 90%까지 조업 가능
- '25년에 잠정 HCR 규칙을 재검토하고, '27년까지 관리전략평가를 통한 관리절차 수립을 위해 노력

2. 북서태평양 저층어업 및 취약한 해양생태계 보호

○ 제안서(미국) 주요내용

- '저층어업 확장이 금지되는 해역' 의 좌표를 명확히 규정
- 저층어업 금어기 확대(11월~12월 → 11월~익년 1월)
- 목표조업이 금지되는 VME 지표 추가(각산호류(black coral), 돌산호목(stony corals) 등) 및 해면 임계량 조정(500kg → 300kg)
- VME 보호를 위해 황제해산계에 추가적인 금어해역 설정
- 북방돔돔 어획량 장려한도를 의무*로 규정

* ① 가입량이 강하지 않을 때 : 일본 500톤, 한국 200톤. ② 가입량이 강할 때 : 일본

10,000톤, 한국 2,000톤

- 과학위 5개년(2023-2027) 연구가 완료될 때까지 해저에 접촉하거나 북방 돛돔을 목표로 하는 저층 트롤 어업 잠정 금지
- 읍서버의 독립성, 중립성, 자격 등에 관한 규정을 도입

○ 논의 결과

- 일본 반대로 황제해산계 추가적인 금어해역 미설정하고 제안서 채택

3. 참고등어

○ 제안서(일본·EU) 주요내용

- (일본) ① 자원상태 악화로 어획량을 2020-2022년 평균어획량 대비 30% 감축 ② 어획량 모니터링을 위해 주간 어획보고 실시 ③ 회원국들의 합산 연간 어획한도 90% 소진 시 회원국들에게 통보하고 회원국들은 통보받은 후 5일 내 조업 종료(올림픽 방식)
- (EU) ① 어획 노력 제한 : 회원국별 투입할 수 있는 최대 어선 척수 수립 ② EU 어획한도 20,000톤을 새롭게 요청

○ 논의 결과

- 2024년과 2025년 TAC를 94,000톤으로 설정
- 2024년과 2025년에 트롤선과 선망선 어획량을 14,000톤과 80,000톤으로 각각 제한
- 중국은 트롤선 3척, EU는 트롤선 1척까지 각각 투입 가능
- 총톤수 10,000톤 초과 어선 투입 금지
- TAC 60% 도달 시까지 월간 어획보고. 그 이후에는 주간 어획보고 실시
- TAC 95% 도달시 사무국장은 모든 회원국들에게 이를 통보하고, 참고

- 등어 조업 회원국들은 통보 받은 후 2일 내 조업 중단
- EU는 2024년과 2025년에 추가적으로 6,000톤 어획 가능

4. 전재

○ 제안서(한국·대만·일본) 주요내용

- (한국) ① 기타 전재 활동(물품 공급 등) 사전 신고 기한 단축 : 활동이 있기 24시간 전 → 2시간 전 ② 전재 활동 수정 신고 규정* 삭제
 - * 전재가 신고된 시간 24시간 전 또는 장소 20해리 이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수정 신고 필요
- (대만) 전재 활동 수정 신고 요건 확대*
 - * 전재가 신고된 시간 및 장소의 72시간 전 또는 50해리 이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정 신고 필요
- (일본) ① ‘어선’ 정의 : 하역하는 선박과 받는 선박 모두 포함하도록 규정 ② ‘전재 기록’ 에 조업일지도 포함되도록 규정 : 선박이 검색을 받았을 때, 조업일지를 통해 특정 일자에 전재하지 않았음을 확인

○ 논의 결과

- 일본 제안서 채택
- 2024년에만, NPFC 온라인 전재 신청을 통해 사전 및 사후 신고하는 선박들은 사전 신고한 예정 시각 72시간 이내 또는 예정 장소 50해리 이내에서 일어나지 않을 경우 사전 신고 수정 제출 허용
- 전재 활동 수정 신고 규정 개정에 대해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

5. 이행감시제도

○ 배경

- 회원국 보존관리조치 이행평가 절차, 방법, 도구 등 세부규정을 담은

이행감시제도 보존관리조치 제안서를 회기간 작업반이 마련하여 제출

○ 논의 결과

- 이행평가 설문지 각 항목에 대한 추가 논의 후 제안서 채택
- 이행평가 설문지 공개 여부에 대해 회원국 간 이견이 표출된바, 공개 여부 및 방법은 기술이행위원회 투명성 절차규칙 개정 시 다시 논의하기로 함
- 사무국이 회기간에 필요시 설문지 내용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, 회원국 이행평가 보고서 작성을 위해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설문지가 회람되어야 함이 강조

5. 기타 채택 제안서 (8개)

제안서 (제안)	주요내용
북태평양 소하성 어류 보호 (캐나다, 미국, 한국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소하성 어류 목표 어업 금지 • 소하성 어류 혼획 시 최소한의 상해를 가하면서 즉시 방류하고 선상 보유 금지 • 혼획된 소하성 어류에 대한 어획 기록 유지 및 승인된 검색관들에게 제공, 사무국에 보고, 과학위원회 및 NPAFC와 공유
북동태평양 저층어업 및 취약한 해양생태계 보호 (과학위원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통발을 제외한 어구들의 해면임계치 350kg으로 변경 • 통발 어구 해면임계치 변경: 산호초 2kg, 해면갯숨 5kg • 취약한 해양생태계 지표 추가 • 최근 분류학상 용어 변경을 반영하여 산호초 명칭 변경 • Cobb 해산에 금어해역 2곳 추가
정어리, 빨강오징어, 살오징어 (일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어종 명칭 변경 : spotted mackerel → blue mackerel

<p>해양 오염 방지 (한국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어구, 플라스틱, 기타 선상 쓰레기 해상 투척 금지 및 회수를 위한 필요 조치 실시(불가항력의 경우 면제) • MAROPOL 규정 10 부록 V과 부합하게 쓰레기 처리 기록부 유지 장려
<p>IUU 목록 수립 (미국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회원국 제공 정보에 대한 검증을 토대로, 사무국이 회기간 IUU 목록 내 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함
<p>근로표준 핵심원칙 (미국, 한국, 캐나다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근로표준 관련 국제협정 비준 및 근로표준 이슈를 다루기 위한 국내정책 실시를 장려 • 자국선 내 모든 선원들에 대한 공정하고 안전한 작업 및 생활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채택 및 이행을 장려 • 항구 검색 시 선원 대우 관련 위반 적발을 장려 • 본 결의 이행에 관해 연례보고서에 보고를 장려 및 노동 착취 사안 관련 정보 공유를 장려
<p>공해 승선검색절차 (작업반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승선검색 시 안전한 승선 사다리 제공 의무화
<p>선박감시시스템 (작업반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‘검색 주체’ 에 항공정찰도 명시하여 항공정찰 시에도 VMS 데이터에 접근 가능하도록 함

6. 차기 회의

○ 제9차 연례회의

- (일시/장소) '25.3.18(화)~3.27(목) / 일본(동경 외 장소)